

제411회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2월20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6)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6)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
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3)
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
7.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1)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3)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8)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4)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5)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2)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6)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7)
2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6)
2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9)
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8)
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지역 의사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7)
25.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90)
26.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37)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1)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3)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4)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9)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2)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2)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
3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6)
3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5)
4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
4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
42.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
4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
44.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
4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
46.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
47.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6)
4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4)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6)
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5)
5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7)
5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4)(추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고영인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4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6) 10
-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6) 10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 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 10
- 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3) ... 10
- 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 ... 10
- 7.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10
-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21) 10
-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3) 10
-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 1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 10
-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8) 10
-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4)	10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5)	10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2)	10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6)	10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7)	10
2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6)	10
2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9)	10
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8)	10
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24. 지역 의사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7)	10
25.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90)	10
26.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10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37)	10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1)	10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3)	11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4)	11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9)	11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2)	11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2)	11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3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	11
3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6)	11
3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	11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5)	11
4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	11
4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	11
42.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	11
4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	11
44.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	11
4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	11
46.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	11
47.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6)	11
4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1
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4)	11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6)	11
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5)	11

5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7)	11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강은미 위원 서면동의)	27
5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4) ...	28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신동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아니아니, 먼저 하고.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고영인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0시18분)

○위원장 신동근 법안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등 2인으로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시를 했어요?

○남인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동근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우선 들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강기윤 위원님 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지역의

사제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의사법안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가 필수·지역의료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의료 환경과 공적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토론마저 허용하지 않고 일방 표결 처리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법안 내용의 정당성마저 퇴색시킬 수 있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1소위 위원장님의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근 강기윤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인가요?

○강기윤 위원 예.

먼저 의사일정 변경 건과 방금,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이 지적하신 1소위에서의 지역의사제 문제 강행 처리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를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개똥철학입니다마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화합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수를 이용해서 법안소위에서 무르익지도 않은…… 지역의사제 2020년 7월 14일 권철승 의원 발의, 2020년 7월 20일 김원이 의원 발의, 한 번도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안소위에 올라와서 조정을 들고 와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것을 강행 처리한, 소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안건 조정을 통해서 공공의대 문제를 다시 의제로 삼습니다. 이 부분도 유감으로 표현합니다.

어제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문제는 정부 측

의견을 들으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문제는 지금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의사 정원이 확대 되고 나면 그 후순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이와 같은 불쌍사나운 일은 없었습니다. 왜 21대가 마감하는 순서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고영인 위원하고 간사로서 서로 타협하고 노력해 왔고 지금껏 별 잡음 없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영인 위원의 뜻도 아니고 신동근 위원장 뜻도 아니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어떤…… 전격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는 반드시 재고돼야 되고, 오늘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을 위원장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근 강기윤 간사님 그 발언, 물론 얼마든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의중까지 예단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강기윤 위원 저 개인 생각입니다.

○김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아니,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요.

○曹明姬 위원 조명희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예, 조명희 위원님 하시는 데……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영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조명희 위원님 하세요.

○김영주 위원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강기윤 간사께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유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사제 법안이 2020년에 발의가

돼서 지금 3년째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기윤 위원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논의는 안 한 게 더 잘못이지요, 여당인데요.

지금 이 지역의사제는……

○강기윤 위원 아니, 그때는 그쪽이 여당이었어요.

○김영주 위원 아니요…… 제 발언시간이니깐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근 예.

들으시고.

○김영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가 붕괴되고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번에 법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지역의사제 법안이 제1법안소위에서 그저께 통과된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 공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큰 문턱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가야 되는데 국회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의사 숫자만 합의되고 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2법안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 표하고요.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 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관심과 지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모두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제 여당 위원님께서 ‘동남풍이 불 때’라는 표현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 법안 논의를 했는데요. 동남풍이 아니라 태풍같이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로 모여 있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번에 반드시 논의되었어야 할 백신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이 이번 소위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백신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백신 피해자 지원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주무부처 질병청이 백신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의 의지가 없다면 이제 국회가 강행해서라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병청이 마련하겠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코로나 백신 후유증 관련해서는 이게 여야 가릴 것 없이 통과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질병관리청에서는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원래 토론 없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曹明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뒤에 다시 또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曹明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중앙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위원장 신동근 못 봤습니다.

○曹明姬 위원 ‘민주, 복지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처리. 여 반발’입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1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법안

이 강행 처리됐지요. 압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소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로 날치기 통과된 이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曹明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법사위 상정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실패가 자명한 정책입니다. 정책 수립도 현장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첫째, 복지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제정법, 청문회도 한 번 하지 않고 복지부가 엄청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 알면서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협상이 난항을 겪는 지금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고통을 주고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방해하려는 술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수의료 혁신 TF팀을 만들어서 현장 이야기, 정부와 해결책을 신중히 추진 중인데 이렇게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셋째,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등 집중 지원은 현재 전국 40개 의대 졸업 후 지역 근무 중인 일반 의사들과의 형평성 논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넷째, 문재인 정권 당시 남원 공공의대 추진으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난 트라우마를 기억함에도 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외피만 다르고 본질은 동일한 지역의사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작태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지역의사제는 일본에서 이미 인권 논란과 실효성 부족으로 폐기된 정책입니다.

민주당 안을 보면 10년 의무복무에 중도 포기 시 면허 재교부 일시 금지 같은 일종의 제재 조항까지 있어서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와 정면 충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50만 명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권 때문에. 그런데 약 40만의 중증 질환자들이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75.9%가 이미 취약지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을 정말 꼭 강행 처리해서 민생을…… 문제가 되는 이런 법을 민주당이 강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근 조명희 위원님, 그 내용은 26항에 지역 의사법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曹明姬 위원 아니, 지금도 공공의료 하나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지금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원래 토론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체적인 의견은 이미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미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 원래 이게 토론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만큼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김원이 위원 제가 지역 의사제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고영인 위원 아니아니, 지역 의사제 논의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신동근 지역 의사제 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지역 의사가 아니고 의사일정 변경동의……

○김원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야당의 위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고영인 위원 일단 표결하시지요. 표결하고 이따가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 신동근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야당에서는 고영인 간사 그다음에 김원이, 남인순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고영인 간사 한 분만 하시고……

○김원이 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들었어요.

○이종성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신동근 여기서는 김미애 위원, 딱 두 분만 듣고 표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김원이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신동근 아니, 나중에 그것은 지역 의사제 할 때 얘기하세요.

○고영인 위원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니까.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종성 위원까지 하지요.

○고영인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종성 위원 저는 토론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신동근 딱 두 분만 하세요, 두 분만.

○고영인 위원 제가……

○위원장 신동근 예, 고영인 간사 먼저 하시고.

○고영인 위원 일단 지금은 법안 자체의 토의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그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뜻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상호 토론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또 당론 수준으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게 누구의 뜻이니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가 날치기니 뭐니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공공의대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기본 취지를 다 살리고 하나로 돼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 의원안인데요 이것을 일단 제가 올린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논의는 했지만 이것이 그동안 충분한 토론이 안 됐던 것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요구했는데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청회도 밝은 안입니다, 작년 11월에 의전원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법안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고 그 취지를 가지고만 얘기하면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습적이니 이런 표현들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여기에 올린 이유는 우리가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그다음에 지역에서 의사 공백인 상태에서 지역 의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의사 증원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1000명당 의사 평균이 OECD가 3.7명인데 서울도 3.6명입니다. 서울의 성형외과로

다 물리는 의사 증원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의 요구,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울의 김미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영인 간사님께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쳤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의미만을 말씀한다면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힘으로 못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의회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압니다.

게다가 그저께 법안1소위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국회법상에 반드시 축조심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조심사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하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2020년 7월에 발의했는데 지난 정권 2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고영인 위원 왜 안 됐습니까?

○김미애 위원 아니, 그때는 왜 안 하다가 갑자기……

○고영인 위원 왜 반대해서 상정이 안 됐는지도 알아보고 오세요.

○위원장 신동근 얘기 들어 보세요.

○김미애 위원 협의가 안 된 것은 양당 간의 문제겠지요.

그리고 왜 법안소위 때 갑자기 이것을 논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정안까지 가지고 나와서 축조심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 강행 의결을 합니까?

또 하나,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법률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어떻게 하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대 정원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이게 논의의 배경이 필수의료이 지금 상당한 위기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서 의대 정원이 나왔고 여기에서 지역의사제가 나왔습

니다.

그러면 논의의 전제가 먼저 의대 정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게 정말 더 심사숙고해야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 그것 포기는 왜 못 합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소위로 회부해서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역의사제법에서 얘기하면 되는 사안인데요.

이제 더 이상……

○강기윤 위원 이종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아니, 그것 같은…… 내가 봤을 때는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법안 심사할 때 그때 또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만.

○고영인 위원 아니, 그냥 표결하고 하시지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정춘숙 위원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강기윤 위원 아니, 잠깐만……

○고영인 위원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30초만……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대표로 강기윤 간사님이 하세요, 30초.

○남인순 위원 아니, 몇 번씩 지금 이렇게 쪼가리고……

○강기윤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 사람들 자르고 말이야.

○위원장 신동근 아니, 됐어요.

○강기윤 위원 소수당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세

요.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정춘숙 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강기윤 위원 지금 공공의대 문제를 어제 논의할 때 여야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상정할 것 같으면 어제 축조심사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룻밤 사이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온 이유를 저는 알지도 못하고요.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지역의사제 우리 국민의 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껴판을, 방해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이 부분은 지금 공공의대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도 조금 듣고 우리가 표결하는 것이, 우리 표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춘숙 위원 아니, 절차에 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강기윤 위원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 우리가 가는 길은, 국민들 위하고 국가를 위한 길은 똑 같습니다. 똑같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들고 나온 것 여러분들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어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아까 김미애 위원 말마따나 여러 가지 국민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법안도 보면 지역의사제도 마찬가지로, 빈껍데기밖에 없어요.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의 참 정말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동근 아니, 나중에……

○강은미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법안 관련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법안 관련해서 나중에 또…… 아니,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법안에서 충분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충분히 드릴게요.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아니, 드릴 테니까……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루려고 하는 법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 법안도……

○위원장 신동근 아니, 법안 때 얘기를 하시라고요.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 법안도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법안이 나오면 병합 처리하는 건데 한 법안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나머지 법안은 다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이렇게 소위에서 논의가 안 돼서 진행하더라도 적어도 관련된 법안은 다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근 충분히 의견들은, 원래 토론 없는 건데 그래도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좀 들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윤 위원 표결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 신동근 아니, 그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에요. 법적 절차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회의 때도 의사일정 변경은 그것을 총리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 절차니까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고영인 위원 위원장님도 뜻을 밝혀야지요.

○위원장 신동근 위원장도 하는 건가요?

○고영인 위원 예, 의사 표시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신동근 좋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었으면 손 내려 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인 중 찬성 14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은 의사일정 제53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배부해 드리세요.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심히 유감입니다.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曹明姬 위원 진짜 유감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신동근 저도 제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현안 토론 때도 그랬고 또 국정감사 시에도 의사를 증원하는 게 의사 증원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물론 정무적 판단이나 전략적 판단에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의사 증원하는 데 반대를 하는데 이것에 온통 의정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을 갖고 그리고 나서 또 의대 증원한다면 반대하고 이거 3년 내 그것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제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동시에 같이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수차례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의정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이나 몇 번 TF에서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황 때문에 일정하게는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논의를 못 했던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률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6)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6)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33)
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93)
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2)
7.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2921)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3)
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5)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8)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4)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5)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2)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6)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7)
2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6)
2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9)
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8)
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지역 의사법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7)
25.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90)
26.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37)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1)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3)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4)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9)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62)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2)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9)
3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6)
3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1)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45)
4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6)
4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7)
42. 지역돌봄보장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0)
43.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6)
44.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6)
45.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2)
46.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6)
47.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6)
4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4)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6)
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5)

5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47)

(10시45분)

○위원장 신동근 의사일정 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인 소위원장께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법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먼저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릴게요.

○소위원장 고영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고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36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강기운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 신동근 아니, 먼저 하고 드린다니까.

○소위원장 고영인 1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7건은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 의원,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관한 판결과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면 복지부장관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서 등본을 송부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종료 가정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변경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을 정의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을 추가하며 임상적 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통계 수집·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유통 개선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용우·신현영·강기윤·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가 간주되는 기관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며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의 위험도가 중위험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상연구가 선행되도록 하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허용하며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및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와 심의를 규정하고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권철승 의원,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적용 범위는 의사·치과 의사·한의사로 규정하며 지역 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미이행하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며 잔여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윤 소위원장님께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1소위 관련해서 1소위 것……

○위원장 신동근 이것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심사 결과 의견이 있어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강기윤 위원 기분이 아닌데 지금……

○위원장 신동근 아니요, 원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기윤 위원 내가 2소위 이거 읽을 입장이 아

년대……

○위원장 신동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하십시오.

○소위원장 강기윤 제2법안심사소위원장 강기윤 위원입니다.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50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7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4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과 이용선 의원, 이종성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 산정 대상에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이나 요양기관 외 출산도 포함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무죄판결 확정 시의 지급보류 처분 취소 등을 규정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제 대상인 주택금융부채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김미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사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증,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건강상태 추적관리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전에 본인이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 기증이 이루어

지도록 한 내용은 가족의 동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 예방사업에 암 검진활동을 추가하고 암 검진사업의 목적으로 암 예방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사업과 암 검진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구강건강사업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상 구강건강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 의사의 적정 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며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 우선 배치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취약지역 우선 배치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 등에 관한 통합지원 및 그 대상자 정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의 신청·발굴·조사, 퇴원환자 등의 통합지원 연계 등 통합지원 절차 규정 등의 내용과 통합지원의 구성요소로서 의료·요양·돌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와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중앙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근무자에 대한 결격사유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직무 관련성 및 밀접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유아교육법의 유사 입법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결격사유로 조정하여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가 겹치지 않고 각각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정보시스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연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입국정보, 건강상태 등 연계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시행일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 측 출석 관련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일시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기윤 위원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의사제의 어떤, 이게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많은 위원들이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심도 있게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의사제의 필요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정부 측 의견을 들으면서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원이 의원이 2020년 7월 27일, 권칠승 의원이 2020년 7월 30일 날 법안을 발의하고 한 번도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공청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사 증원을 통해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역의사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대안이 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는 자료를 주지도 않고 민주당 위원들만 쥐 가지고 긴급히, 우리 위원들 두 사람 빠진 그 틈을 노려서 6 대 4로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행 처리한 이유를 알지도 못하겠고요. 그리고 안 하자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이게 내가 다른,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정부 2020년도에 의사 국가고시 취소하면서 왜 난리가 났습니까? 공공의대 문제 때문에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의정협의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의사인력 문제 논의하면서 중단된 사건이 공공의대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걸 반추해 보면 지금 지역의사제 문제도 공공의대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동안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의사 정원을 얼마나 확대해야 될까,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의료노조에서도 89.3%가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90%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문제로 무산됐던 이 사건을 또다시 재현하는 건지, 심히 우

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몰타기하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사제 문제는 제가 법안소위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문제는 정부가—아마 합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발표하고 나면 원 포인트, 21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원 포인트 열어서 지역의사제 문제를 논의하자고. 일에는 앞뒤 순서가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때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고영인 간사가 맡고 있어서 기습적으로, 우리한테는 대안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폭거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고 저는 강력히 개똥철학을 이야기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화합하고 타결해서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사제 문제는…… 위원장님, 지금도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은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정부 측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부, 장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듣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나마 정부 측 의견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장관님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위원장 신동근 좀 이따가 하시고, 그건 나중에.

우선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그다음에 장은미 위원님.

○김원이 위원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그동안 적극 검토해 오고 있다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는 여러 차례 확인한바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더불어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까지 동시에 추진해야만 정부의 그 정책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거 다라고 주장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던 의협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오로지 과업을 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면 25학년도부터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24년 4월까지 정원 규모와, 그러니까 의사 정원 증원 규모와 배분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를 2월, 배분계획을 4월에 밝히면…… 지역의사제하고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논의해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한 후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면 2월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계획을 짚다고 하면 지역의사제 문제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논의가 불가능해요. 정치 일정을 보면 1월에는 국회가 안 열리고요. 2월부터 3월에는 각 정당의, 주요 정당들의 경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 그다음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이 얘기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일관되게 빨리 논의하자, 지역의사제와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 문제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좀 앞당겨서 얘기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의사 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된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얘기했고, 지난 1법안소위에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했고 표결 결과 오늘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역의사제 법안이 처리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침 지난, 조규홍 장관도 18일 월요일 날 광주에서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문제에 대해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즉 정부도 사실상 검토가 끝난 거예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그리고 이미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미 제출됐어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 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 시점부터 지역 복무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지역 의사 과정을 선택한 것으로 봐서 이 지역의사제는 입법성이 타당하고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준 거예요. 즉 그동안에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우려도 깔끔하게 해소가 됐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오늘 반드시 지역의사제 관련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좀 힘 있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장님, 제가 정부……

○위원장 신동근 잠깐만요, 잠깐만.

○강기운 위원 지역의사제 한 번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고영인 위원 왜 안 됐을까요? 상정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

○위원장 신동근 잠깐만, 잠깐만요.

○고영인 위원 왜 상정을 안 해요, 그렇게 하자고 계속 요구했는데?

○강기운 위원 아니, 한 번도 우리가 간사 간에 논의한 적이 없어요.

○고영인 위원 요구했는데 상정을 안 했잖아요.

○강기운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잠깐만요.

○고영인 위원 아니, 국민의힘에서 안 했지, 계속 요구를 하는데.

○강기운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때 지난 정부에서 그거 안 했습니까?

○위원장 신동근 아니,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장님, 김원이 위원님께서 제가 광주에서 한 말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위원장 신동근 아니, 내 얘기 들어 봐요.

○강은미 위원 발언권 없으시잖아요. 나중에 발언권 받고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발언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강기운 위원 발언권 한번 주세요.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경고 좀 해 주세요.

○강기운 위원 왜냐하면 법안 토론하면서 정부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동근 아니아니, 잠깐만요. 내 얘기 들어 봐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상 법안 대체토론 시에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3분 딱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오후에 본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분 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고.

조규홍 장관님은 전체적으로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지금 하나 얘기할 때 하나마다 계속 얘기하면 되겠어요?

○강기운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 얘기하고서 들으면 되잖아요. 정부 측 의견을 뭐 그렇

게……

○**위원장 신동근** 얘기 듣고 하시라고, 제가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강은미 위원님 3분 내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없던 규칙을 갑자기 그렇게 만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근** 아니, 이건 국회법에 3분 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정하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에서 축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강은미 위원** 아니,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 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축조심사 없었지요.

○**김미애 위원**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보잖아요.

○**강은미 위원** 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한 후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실험 때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내모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로 치료대상을 한정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치료가 안전성, 유효성, 효과성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여전히 줄기세포의 무허가 치료로 인해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부작용과 사망, 고통이 확인 되고 있음에도 충분한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거치지 않고 위험한 치료에 법적 근거를 달아 준 것입니다.

기존의 의료와 의약품 허가 절차가 있음에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들 이는 허울 좋은 명분만 쌓아 줄 뿐 이해당사자로 구성될 게 예측되고 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 보해 주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환자단체와 국민들의 개정안 반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국민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개정안을 처리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제는 영리 기업들과 주식 투기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중증·희귀·난치질환 자들에게 수백, 수천만 원의 고비용마저 부담시 키며 이들을 시험대로 내몰게 될지도 모릅니다.

첨단재생의료는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통해

발전해야 합니다. 과학적·의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절차를 충실하게 거쳤을 때 제2의 황우석 박사 사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손쉬운 제도 진입은 결국 환자를 부작용으로, 고통으로,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여야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의 통과를 철회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전문적 의견과 환자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숙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제 관련인데요, 저는 집권 여당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문제 그리고 지역 의료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공의대법과 함께 지역의사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 때문에 의대 정원이 논의되기 전에 이게 먼저 논의되어야 실제로 의대 정원이 논의될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의대 정원 확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제정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축조심의도 없이 수정안을,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줄줄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소위 위원장이 축조심의 없이 법안을 줄줄 읽고 나서 통과돼 버리는 건 저는 아무리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서 논의된다고 하면 축조심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다음은 고영인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미애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이렇게……

아까 하셨잖아요. 하신 분들은 가능한 안 하신 분들한테 양보하세요.

○**고영인 위원** 지금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서 기습적이다, 절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 하시는데요. 이 법안이 상정, 그러니까 대표발의가 된 이후에 상정이 안 된 이유는 강기윤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상정할 의지도 없이 그동안 방해만 해 놓고 왜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계속 요구했어요,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걸 논의하자고. 그런데 그걸 올리지도 않고 갑자기 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의원 위크숍을 통해서도 논의했고요, 세미나하고요. 우리 자체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상정할 날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 온 안을 제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절차에 있어서도 그날 논의를 안 한 게 아니라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0명의 위원이 남았는데 2명의 위원은 오늘 하는 게 안 맞다고 그랬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내용적으로 옳다고 했습니다. 내용상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무조건 의사 증원을 한 후에 해야 된다. 그런데 한 후에 할 때 동시에 해야 되면 당연히 준비가 되고 '이 안에 대해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정부안을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정도가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부도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도 전혀 할 의지가 없어요.

그냥 지역 의사 증원을 한 후에 하겠다. 한 후에 뭘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읽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사 증원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데가 없고, 긴급하게 산부인과 의 문제들도 지금 심각하고, 외과·신경외과 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의료 의사가 더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의대가 없으면 의대를 우리가 증설해야 된다는 것 방향을 제시해 왔고, 저희들은 끊임 없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 없이 증원 얘기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할 의지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자라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는 오랫동안 논의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날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조심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날 수정안을 여러분, 위원들 앞에 다 배포했습니다. 수정

안을 저희들이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정리한 안이라고 분명히 제가 밝혔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반대가 있었고 찬성, 오늘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반대하자고 하는 위원들은 축조심의를 안 하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방해만 했어요, 오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날 하자고 한 위원들의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고. 제가 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그다음에 그 법안을, 그러니까 축조심의를 거의 대체되는 수준으로 한 거지요, 우리는 다 심의를 한 안을 수정안으로 냈으니까.

○강은미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축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과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적절합니다.

○曹明姬 위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고영인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법안에 대해서……

○강기윤 위원 아까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우리한테 깔지도 않았어요.

○고영인 위원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하셨잖아요.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강기윤 위원 안 된다 했지, 하지 말자가 아니지.

○강은미 위원 하지 말자고 했든 하자고 했든 규정은 지켜 주셔야지요.

○고영인 위원 그다음에 그 법안에 대해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옆에서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제가 다 읽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마무리해 주세요.

○曹明姬 위원 갑자기 수정안 갖고 와서 통과시키자고 했잖아요.

○고영인 위원 갑자기가 아니고……

○曹明姬 위원 갑자기 했잖아요.

○고영인 위원 그날 하자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계속하려고 그랬는데……

○曹明姬 위원 갑자기 휴회하자 그래 놓고 가 가지고 수정안 갖고 와서 했잖아요.

○위원장 신동근 아니,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曹明姬 위원 왜 거짓말합니까?

○**고영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방해만 했잖아요.

○**曹明姬 위원** 팩트대로 해요, 팩트대로. 다 봤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고영인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결론적으로 이것을 심의조차 할 생각이 없었다, 정부 측이나 국민의힘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선후의 문제로만 돌렸고,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曹明姬 위원** 상식적으로 하세요, 상식적으로.

○**고영인 위원** 그것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의견 수렴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수고……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소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본인이 위원장직에 앉아서 이 대안을 이야기했고요, 그것은 중립의 의무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 우리 쪽에 준……

○**위원장 신동근** 아니, 지금 발언권……

○**고영인 위원** 이거 제안은, 김원이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위원장 신동근** 자, 양쪽에서 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발언하세요.

○**고영인 위원** 김원이 의원이 했고 최종 의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법안 내용을 읽은 겁니다.

○**위원장 신동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김미애 위원** 저는 우리 국회가 모든 것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曹明姬 위원** 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আগে 가서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했지요.

○**남인순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위원장 신동근** 김미애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조용히……

○**김미애 위원** 그나마 보건복지위는 그래도 서로 존중하면서 저는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보호출산법도 2020년 12월에 발의해서 6회 소위에 올라갔지만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혔고 나중에는 서로 심사숙고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축조심사를 한 조문, 한 조문 뜯어 가면서 해서……

○**고영인 위원** 법안을 올려 줬잖아요. 법안을

거기서 안 올려 놓고 왜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김미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좀 들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법안은 누구 탓을 할 게 아니지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고영인 위원** 한쪽에서 막는데 어떻게 올려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 반대하는 것 못 한 것 있습니까? 다 해 왔는데 그 말씀은 지금 맞지 않고요.

국회법 57조 8항 단서에 보면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58조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특히나 이 법안은 제정법안입니다 제정법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게다가 여기에는 적용대상이 소중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일각에서는 반대도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이게 제대로 대한민국에 정착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의무입니다. 입법 취지 좋다고 마음껏 밀어붙이면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폭력입니다. 권력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힘없는 국민일지라도 그 소수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의사는 물론이고 치과 의사, 한의사, 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봤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되는 게 국회가 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왜 생략합니까?

그래서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라 하는 그 취지가 그것이고. 다만 그 일각, 전부의 목소리를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라도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여기에 공청회를 대체할 만한 참고가 있다, 그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상임위에 왔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열어 놓고 검토하면 모르겠지만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껏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것을, 이 법이 과연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우리가 할 자신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다 검토하고 했다고요? 그러면 민주당만 심사하시면 되지요. 왜 우리는 들러리 세웁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저는 철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 논의할 때 우리한테도 말씀 하시지요.

○정춘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자,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춘숙 위원 예.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법안과 관련해서 백신 피해자 보호법 두 분 간사께 올려 달라고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고 전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이유는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간사 간 협의 안 되면 법안 죽을 때까지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눈물을 토하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날씨에 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반대하면 끝까지 못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누구 때문에 못 했니 누구 때문에 못 했니 이런 것…… 사실 저는 2소위 위원장님한테 불만 되게 많았습니다. 왜 안 해 주시는 겁니까? 말로만 해 주신다고 그러지 실제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토론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법이 지금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협의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협의 안 되면 끝까지 못 한다는 겁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11시 25분이고요, 본회의도 해야 되고 우리 법안 정리해야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예.

꼭 해야 돼요?

○고영인 위원 예, 이것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축조심의가 안 됐다는 얘기, 제가 아까 그 반박 논리를 얘기했는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절차를 제가 다 물어보고 했어요.

○曹明姬 위원 무슨……

○고영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저랑 대화하자는 겁니까, 계속?

그러니까 수정안을, 법안을 여기다 다 깔았어요. 깔았고, 이쪽은 계속 그것을 심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한 안을 제가 정리했고 요약을 다 읽어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축조심의에 대체되는 것이라라는 걸 확인하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제가 축조심사를 했어요.

○曹明姬 위원 자기들끼리 했으면서……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자, 이거…… 의사진행발언이요?

○강기윤 위원 예.

○위원장 신동근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기윤 위원 예, 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내가 수정안을 냈잖아요.

○위원장 신동근 아니아니, 의사진행발언을……

○김원이 위원 제 조항에 대해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게 축조심사지 뭐가 축조심사예요?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짧게 1분만 하세요, 1분.

○강기윤 위원 예.

우리 상임위에서 정춘숙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들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동의하는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2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또 간사로서 저의 소임은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안을 상정하고 말고 하는 부분 여야 간사에 합의할 때 제가 가능하면 고영인 간사가 안 받았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반영구화장법이라든지 장애인기본법 이 부분도 지금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뜻을 같이하지만 정부 측에서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쪽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강기윤이가 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요.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자는 쪽에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측에서 그 안이 나오면 그때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춘숙 위원 그러면 정부가 안 하면 못 하는 겁니까, 국회가!

○강기윤 위원 아니,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말 안 끝났고.

○위원장 신동근 좀 정리해 주시고.

○강기윤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역의사제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고영인 위원이나 김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준비를, 의대 정원 문제가 그 안에 필수로 들어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준비가 아주 그 안에,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만약에 의대 정원이 발표가 되고 나면 원 포인트—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그거라도, 원 포인트 바로 하면 일의 순서가 맞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위원장 신동근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한 얘기예요, 그것 또 하고 계시니까.

○강기윤 위원 의대 정원 문제가 저번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두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동근 자, 됐고요.

○김원이 위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아니아니, 잠깐……

○김원이 위원 왜냐하면 신상발언, 신상발언……

○위원장 신동근 아니아니, 어지간하면 좀……

○김원이 위원 잠깐만, 1분만요.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신동근 신상발언?

○김원이 위원 예.

○위원장 신동근 1분만 줘요.

○김원이 위원 자꾸 축조심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축조심사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소위원들이. 김원이 안하고 권철

승 안하고 비교하면서 권철승 안의 이것은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권철승 안에 비해서 이 안은 내 안이 더 좋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권철승 안에는 의사만을 해당하게 해 뒀어요. 그런데 제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넓혀야 한다고 조정해서 제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리고 지역 관련해서는 제가 권철승 안을 수용해서, 제가 낸 법안을 포기하고 권철승 안을 수용했고요. 조정안도 있었고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제가 그걸 일일이 조항, 조항 읽으면서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법안소위 위원장인 고영인 위원장이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해서 표결 처리한 거예요. 왜 축조심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치시는 거예요? 축조심사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강기윤 위원 아니, 적용 범위도 없고 적용 지역도 없고요.

○위원장 신동근 자, 됐습니다. 제가……

○김원이 위원 그게 축조심사지 뭐가 축조심사입니까?

○曹明姬 위원 지역의사제, 지역 의대 만드는 것도 다 설명 하나도 안 해 놓고 무슨……

○강기윤 위원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다 보내 놓고 있어요. 모든 걸 대통령령으로 다 보냈단니까.

○위원장 신동근 잠깐잠깐…… 조용히 하세요, 잠깐 정리할 테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신현영 위원 말씀하시고 아까 서정숙 위원 했어요. 그 두 분만 마저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 조규홍 장관 얘기 듣고 표결 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테니까……

○신현영 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서 보궐선거 패배로 정부 여당은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줄속으로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통해서……

○강기윤 위원 가능하면 그런 발언은 좀 취소하세요. 법안에 집중해서 이야기 좀 하세요.

○고영인 위원 듣고 합시다.

○신현영 위원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십시오, 강기윤 간사님.

○강기윤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현영 위원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얘기하세요.

○강기윤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여기서 그게 왜 나오니까?

○曹明姬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TF 팀 만들어서.

○신현영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 예의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통해서 2000명, 3000명 늘려서 여론몰이를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민주적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자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다가 이슈 자체가 의대 정원 확대로만 전환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말로만 긍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채 외면해 왔던 게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정부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 대응 방식으로는 3000명의 의사를 배출하든 5000명이 배출되든 경증환자 중심의 비급여 많은 영역으로만 직역이 쏠리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조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 공급 과잉으로 초래하는 의료 과잉으로 건보 재정 악화를,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겁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활성화가 가능한 기전이 마련되어야 정책의 성공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논의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건강의 입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증환자분의 의료진은 항상 수사와 재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형사처벌의 리스크 우려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의료계 현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 미약합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7시간 대기하다가 대기실에서 사망한 70대 환자 진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징역형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붕괴, 의대 정원 확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필수의료 붕괴는 와르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에 정부가 빠르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쉽게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있는 집을 좀 증축하려고 합니다. 증축하려고 할 때는 그 면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증축을 하는지는 이미 우리 사회적인 컨센선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 증축도 하기 전에 세부적인 것을, 구조와 여러 가지 재료는 어떤 걸 쓸 건가 이게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증축이 되어야 뭐…… 증축의 면적이 확보되고 그것이 되어야 구조라든지 이걸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20년 7월 문정권 때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했습니다. 지금 2023년 12월입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무슨 직무유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여당 기간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여당 기간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부와 함께 이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 수장 얘기 왜 안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매번 보고받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좀 장관님 말씀하시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자꾸 숨기고 이러면서 얼렁뚱땅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지금 소모적인 의정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지 맙시다. 보건복지위 그러지 않았다고 저희가 자부심 느꼈는데 이렇게 임기를 몇 달 남겨 놓고 이런 것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때 그만 쓰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마지막으로 조규홍 장관, 위원들 의견에 대해서 요점을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사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역 의사 선발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으로서 25년 이후의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의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법안이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의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위원장 신동근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니, 백신 문제도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그냥 한번에 다……

○위원장 신동근 아니요, 그냥 그걸로 하시고 정리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예, 그래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제가 빠진 건데요,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광주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무복무 기간이 길 경우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명칭이 어떻든 의사분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건 사실은 결단과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 초반기 같으면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21대 마지막 국회 일정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봤을 때 이것 지금 미루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아까 하신 것처럼 이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기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예.

○강기운 위원 제가 제안한 원 포인트, 다음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하고 나서 원 포인트 그 부분 찬반 한번 물어 주세요.

○고영인 위원 똑같은 얘기 그만해요, 이제.

○위원장 신동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법안마다 의결하니까 그때 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면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아까 의사 변경동의안 말이지요?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강은미 위원 아닙니다. 26번 안과 관련해서는 축조심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동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강은미 위원 아니, 축조심의를 생략한다고 금방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의 26……

○고영인 위원 표결해야지, 뭐.

○위원장 신동근 그건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또 표결?

○위원장 신동근 예.

○서정숙 위원 아이고, 숫자놓음 그만합시다.

○강은미 위원 아니, 축조심의를 하는 것을 표결……

○위원장 신동근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 손 들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잠깐만요.

○고영인 위원 뭐에 대한 찬성? 정확히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장 신동근 축조심의 생략하고자 하는데……

○고영인 위원 생략에 찬성합니다.

○강은미 위원 아니, 이것을 축조심의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신동근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고영인 위원 원래 그렇게 해 왔어요, 전체회의에서 한 적이 없어.

○강은미 위원 아니, 소위에서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라도 축조심의 해야지요.

○김미애 위원 소위에서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소위에서 안 했는데……

○위원장 신동근 이게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미애 위원 이것은 제정안이잖아요.

○曹明姬 위원 제정안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정숙 위원 입법기관 스스로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

○위원장 신동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하는……

○김미애 위원 제정안은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신동근 예.

다 축조심의 생략하는 데 찬성…… 아니, 여기 이것 반대하시는 거예요?

○김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6항도 포함하는 겁니까?

○강기윤 위원 전부 다, 축조심의를.

○고영인 위원 이걸 찬성이지요, 축조심의 생략은.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안들은 축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26번 안과 관련해서는 축조심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웁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동근 제정안이 아니고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니까 첨생법 아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건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가결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曹明姬 위원 25번, 26번 이야기했는데 딴 거 가지고……

○위원장 신동근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의……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내용

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

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은미 위원 반대합니다, 법안.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첨단재생법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보십시오.

(거수 표결)

다 됐나요?

손 내려 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거수 표결)

잘 세요.

손 제대로 들어요, 서영석 위원님.

첨단재생 찬성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찬성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손 드세요, 그러면.

한 분 더 추가.

그러면 제석 22인 중 찬성 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자, 다음은 제11조……

○김미애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있어요? 그러면 이견 의견을 또 얘기하기보다는 찬반을 묻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도 의견에 대한 표명은 하고

찬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동근 얘기했잖아요, 다.

○김미애 위원 다 세부적으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했는데 이걸 또 얘기하면……

아까 하셨어, 다. 그러니까……

○강기윤 위원 이걸 남겨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하세요.

○강기윤 위원 예.

지역의사제 문제는 아까 정부 측 장관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고, 아까 말씀 중에 이 안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자 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의대가 없는 곳은, 그러면 김원이 위원이 그렇게 지역 의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도 남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의대가 없는 곳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불합리한 법을 이렇게 줄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범위, 응시자격, 복무지역 변경 등등 고민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의사제 자체의 껍데기만 가지고 할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통령으로 다 위임해 뒀어, 지금.

이거는 법안을 심의하는 축조심의의 기능도 축소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껍데기 지역의사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모독하는 처사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장 장관님이 얘기했다시피 지역에 의대가 없는, 그야말로 김원이 위원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소위에 보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원 포인트라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여당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자, 다음 1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시행령 쿠데타라고 하면서 2조 정의 규정부터 왜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까?

○위원장 신동근 아니, 아까 논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김미애 위원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신동근 다음으로 제26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까?

그러면 반대가 있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거수 표결)

○김미애 위원 반대라기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줌……

○위원장 신동근 어쨌든 지금 표결하는 거니까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인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8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강은미 위원 서면동의)
(11시54분)

○위원장 신동근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으로부터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인이 안 계시네. 그래도 본인은 했으니까 표결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실장 현승철 거기도 찬성하는 한 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근 아, 찬성하는 한 분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게 의제 성립이 안 되는데……

강은미 위원님으로부터, 5건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서 추가 동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의제 설정이 안 되는 걸로 되고 있어서……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예, 그러세요.

의결하고 말씀하시지요.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 저는 아무리 정말 정당한 법안이고 필요한 법안이라도 최대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도 같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법안소위 위원장이 충분히 논의를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전체회의에서 부의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법안들은 같이 좀 다루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공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서서도 그것은 여야 위원들을 떠나서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절차라도 같이 밟아 줘야 정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민주당이 특정한 의원 법안만 가져다가 이 법안만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은 같은 내용들을 다루어 주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부결돼 버려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구요.

저는 2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도 좀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들의 이 법안을 심의할 권한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어쨌든 그 법안이 같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신동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재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신동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나머지 4건의 추가된 내용은 어쨌든 간사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일정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최재형 위원 강은미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부결로 의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된 겁니까?

○위원장 신동근 이미 의제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분이 그걸 제출하고……

○최재형 위원 들어오셨잖아.

○위원장 신동근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아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최재형 위원 본인이, 발의하신 분이 안 계셔서?

○위원장 신동근 외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

○고영인 위원 아니아니, 본인은 당연히 찬성인데 전체 동의가 안 된 거지요.

5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4)

(11시58분)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추가된 의사일정 제53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을 좀 깔아 주세요.

○강기윤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놓쳤어요. 그거를 많은 위원들이 같이, 강은미 위원 이야기마따나 그거는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그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혼돈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신동근 아니,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었어요.

○강기윤 위원 아니, 강은미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신동근 이미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지나간 사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강기윤 위원 예, 표결에 부쳐 주시지요.

○위원장 신동근 이미 진행된 사안인데 그걸 다시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예, 최연숙 위원님.

짧게 좀 얘기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최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성주 의원님 안인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16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벌써 5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다면 병합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놓친 부분 인정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좀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최재형 위원 강은미 위원안에 대해서 부결 선언하셨는지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동근 예, 아까 부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거 토의하면서 좀 보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동근 예?

○전혜숙 위원 그냥 토의합시다.

○최연숙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게 16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한 법안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건 인정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정말 다시 되어야 된다, 16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법안만 한다는 게요.

○위원장 신동근 아니, 그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의사 변경동의안이 아까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안으로는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로 동의를 구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

○최연숙 위원 그러면 두 간사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16개에 대해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 16개가 올라올 수 있는지 두 분 간사님께 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영인 위원 한쪽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반대하는데…… 뭘 갑자기 올려서 그러면 오늘이라도 논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논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왜 논의를 하자고 그래, 반대하면서?

○최연숙 위원 지금 이게 부결이 됐으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강기윤 위원 아니, 나머지 법안은 그래도 검토를, 논의를 좀 하셔야 안 되나요?

○고영인 위원 그러면 오늘 밤새서 합시다.

○정춘숙 위원 위원장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어제도 논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아니, 아까 제일 처음에, 오늘 회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의사 변경동의안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때 동의가 됐고……

○고영인 위원 그리고 계류돼 있으니까 이후에 해서 또 개정안 내세요. 그러면 되지, 뭐.

○위원장 신동근 그다음에 아까 그 5건에 대해서는 강은미 의원님이 또 발의해서 동의서를 해서 제가 한 번 더 여기 시작하기 전에 회의에 부쳤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30초만……

○고영인 위원 빨리 진행하시지요. 12시입니다.

○정춘숙 위원 어제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고영인 위원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하시지요. 너무…… 계속 논의할 거예요, 진짜?

○정춘숙 위원 어제도 논의를 안 했는데 무슨 오늘 논의를 해요?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대표로 강기윤 간사님 30초만 딱 하시고 그다음에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일사부재리여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은미 위원이 이야기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아무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절차를 다시 리뷰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른 17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의사일정 변경 건 그거 해서 또 찬반 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의사 표현해도 좋으니까…… 그런데 단지 이 16건의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입장을 봐서라도 우리가 잠깐 놓쳤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신동근 고영인 간사님 한 말씀.

○고영인 위원 김성주 의원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나머지 15개 안이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고요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한 것은 지금 이걸 전체를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 이 법안을 제가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계속 지금 추후에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그 15개 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논의할 의향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 가지고 또 보완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동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양 간사님 간에 협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장님, 정부……

○위원장 신동근 아, 정부 입장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감사합니다.

지금 의결 대상인……

○위원장 신동근 아니아니, 잠깐만요.

○강은미 위원 이것은 축조심의……

○위원장 신동근 잠깐잠깐, 지금 그게 아니고……

축조심사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질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절차와 관련해서 아까 ‘1안부터 몇 안까지 의견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방식이면 실제로 우리가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상임위에 바로 부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도 듣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해야 그나마 좀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 아닙

니까? 그렇게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근 다음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규홍 장관 발언 듣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감사합니다.

지금 의결 대상인 2020년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년 추진 당시에 사회적 논란이 있어 가지고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그다음에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이 주요 내용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오늘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근 다음은 제21조부터……

의견 있으신가요?

○강은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신동근 아니, 의사진행발언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봐서……

제21조부터 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9일에 공청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견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같은 내용 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3분 쓰시고.

○강은미 위원 저는 정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적어도 서남대병원 인력과 관련된 국립의전원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먼저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긴 했으나,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법률안을 다루면서 소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상임위에서 절차를 거치면 좀 더 법안을 다루는 방식을 취해 주시는 게 필요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서정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위원장 신동근 그거 같은 내용이지 않아요.

○서정숙 위원 아니요, 제가 이게……

○위원장 신동근 서정숙 위원님 주세요.

○서정숙 위원 저희가 이 자료도 늦게 받았고, 제16조(대학원의 설치) 내용을 제가 지금 급하게 봤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행정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이대로 가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법이거든요.

장관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분명히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도 있고 개별 보건대학원도 있는데……

○위원장 신동근 이미 축조심사는 마쳤는데 뒤늦게 또 얘기하시면……

○서정숙 위원 이거 정말 이렇게……

○위원장 신동근 절차가 된 거고요.

○서정숙 위원 위원장님, 연말에 너무 졸속으로……

○위원장 신동근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면 제가 하겠는데……

○서정숙 위원 아니, 설명을 좀 들읍시다.

○위원장 신동근 왜냐하면 그거 이미 지나서, 공청회 개최까지 지금 얘기한 사안이라서……

○서정숙 위원 이런 설명도 못 듣게 하는 의도가 됩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근 그러면 나머지 사안들에 관련해서는, 나머지 법들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있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인 중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관련한 것 말고.

○위원장 신동근 중간에 하기는 그래서, 지금 장관님 이미 나와 계시는데 또 중간에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서……

○정춘숙 위원 저 이따 한 말씀만 할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근 예, 그래요. 나중에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확대하고 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더욱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법사위 심의, 법안 시행 준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야 간 이견이 컸었던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고영인 제1법안소위 위원장님, 강기윤 제2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들에 대해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과학 발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고영인·강기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마지막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존경하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검역법 개정으로 검역정보시스템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역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해외 유입 감염병 유행 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강기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숙 위원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백신 피해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제가 꼭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국회 전문위원이 대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일별을 하였고, 원래 어저께는 그 안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의견을 가져와서 정리를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에 올라오지 않았고 아직 질병청에서 준비가 안 됐다, 연구 보고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국회에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안 됐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민들을 저렇게 차가운 길바닥에 내몰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 반드시 백신 피해자 보호법을 넣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질병관리청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정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여야 간사 간에 다음에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서면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다. 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 기 윤	강 선 우	강 은 미	고 영 인
김 미 애	김 민 석	김 영 주	김 원 이
남 인 순	백 종 헌	서 영 석	서 정 숙
신 동 근	신 현 영	이 중 성	인 재 근
전 혜 숙	정 춘 숙	조 명 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혜 영	한 정 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진 선 희
전 문 위 원	정 경 윤
전 문 위 원	조 문 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 관	조 규 홍
제 1 차 관	이 기 일
제 2 차 관	박 민 수
기획조정실장	김 혜 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정 윤 순
인구정책실장	김 현 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 병 왕
정책기획관	유 주 현
보건의료정책관	정 경 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장	오 유 경
차 장	김 유 미
기획조정관	우 영 택
바이오생약국장	신 준 수
질병관리청	
청 장	지 영 미
차 장	최 종 균
기획조정관	이 상 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2. 고영인 · 정춘숙 · 인재근 · 김민석 · 김원이 · 서영석 · 전해숙 · 한정애 · 강선우 · 최혜영 · 신현영 · 김성주 의원 발의)

간호법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2. 고영인 ·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해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현 · 권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회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3. 강은미 · 장혜영 · 이은주 · 심상정 · 배진교 · 남인순 · 조오섭 · 류호정 · 용혜인 · 윤미향 의원 발의)

11월 24일 회부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최영희 · 권영세 · 박대수 · 이용호 · 최재형 · 조경태 · 김성원 · 최춘식 · 하영제 · 이종성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김민석 · 최혜영 · 한정애 · 김민철 · 강득구 · 김병욱 · 민병덕 · 노웅래 · 정춘숙 · 김성환 의원 발의)

노인등 의료 · 요양 · 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최종윤 · 김승남 · 김홍걸 · 김종민 · 민병덕 · 박상혁 · 이인영 · 허영 · 김정호 · 인재근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남인순 · 강은미 · 윤건영 · 윤미향 · 민병덕 · 고영인 · 박주민 · 이수진(비) · 권인숙 · 양이원영 · 김정호 · 인재근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최재형 · 김희곤 · 태영호 · 이종성 · 최연숙 · 백종헌 · 권명호 · 최영희 · 최춘식 · 김미애 · 김예지 · 강기윤 · 김용판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11. 24. 정부 제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최재형 · 김희곤 · 태영호 · 이종성 · 최연숙 · 백종헌 · 권명호 · 최영희 · 최춘식 · 김미애 · 김예지 · 강기윤 · 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27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전혜숙 · 김희재 · 서영석 · 이병훈 · 김홍걸 · 이용빈 · 김정호 · 이상현 · 인재근 · 양정숙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강은미 · 심상정 · 배진교 · 류호정 ·

이은주 · 장혜영 · 김홍걸 · 윤영덕 · 윤미향 ·
용혜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8일 회부됨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8. 홍석준 · 김용환 · 엄태영 · 박대수 ·
임병헌 · 金炳旭 · 성일중 · 박덕흠 · 한무경 ·
이현승 · 김예지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8. 전봉민 · 정운천 · 서일준 · 김용환 ·
이종성 · 金炳旭 · 김정재 · 윤영석 · 구자근 ·
박성민 · 이용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

(2023. 11. 28. 이성만 · 정일영 · 허종식 · 오영환 ·
송옥주 · 한정애 · 신현영 · 윤미향 · 민병덕 ·
강준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9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9. 전봉민 · 정운천 · 서일준 · 김용환 ·
이종성 · 김정재 · 윤영석 · 구자근 · 박성민 ·
金炳旭 · 이용 의원 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9. 한정애 · 허숙정 · 김홍걸 · 윤미향 ·
최인호 · 김상희 · 강선우 · 이원욱 · 서영교 ·
박홍근 · 이성만 · 장철민 의원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9. 한정애 · 허숙정 · 김홍걸 · 윤미향 ·
최인호 · 강선우 · 김상희 · 이원욱 · 서영교 ·
박홍근 · 이성만 · 장철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30일 회부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30. 한정애 · 김홍걸 · 윤미향 · 김정호 ·
최인호 · 김상희 · 강선우 · 권인숙 · 이원욱 ·
서영교 · 신현영 · 박홍근 · 장철민 · 강병원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30. 신현영 · 최기상 · 이소영 · 허종식 ·
조오섭 · 고영인 · 김민기 · 용혜인 · 김병기 ·

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일 회부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서정숙 · 한무경 · 박대수 · 최영희 ·
김예지 · 백종현 · 박성민 · 강기윤 · 구자근 ·
서일준 · 서범수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권명호 · 강기윤 · 구자근 · 김용환 ·
김희국 · 박대수 · 배준영 · 안병길 · 이태규 ·
지성호 · 최영희 · 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박상혁 · 홍성국 · 박정 · 김성주 ·
김민석 · 민형배 · 허영 · 어기구 · 한준호 ·
김병욱 · 김정호 · 김민기 · 최인호 · 장철민 ·
허종식 · 홍기원 · 김남국 · 임종성 · 민병덕 ·
김윤덕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김성주 · 김민석 · 김윤덕 · 진성준 ·
정성호 · 민병덕 · 백혜련 · 어기구 · 박홍근 ·
김교홍 · 이성만 · 권칠승 · 전용기 · 문정복 ·
정일영 · 김종민 · 이개호 · 송옥주 · 조정식 ·
김성환 · 오영환 · 한병도 · 강선우 · 윤영덕 ·
설훈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김민석 · 김성주 · 김철민 · 허영 ·
박상혁 · 홍성국 · 김경협 · 기동민 · 박성준 ·
임호선 · 김민기 · 강선우 · 김남국 · 김영진 ·
강준현 · 한정애 · 서영교 · 최혜영 · 장경태 ·
김영호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3. 12. 6. 정부 제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이종성 · 이용호 · 김영선 · 성일중 ·
김미애 · 김성원 · 박덕흠 · 이명수 · 박성중 ·
박대수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박덕흠 · 김용환 · 류성걸 · 하영제 ·
성일중 · 홍문표 · 이현승 · 박정하 · 백종현 ·
박대수 · 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7일 회부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신현영 · 이소영 · 김민철 · 조오섭 · 홍정민 · 고영인 · 김민기 · 김정호 · 용혜인 · 김성주 · 김병기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이수진 · 이정문 · 박상혁 · 우상호 · 주철현 · 정태호 · 신현영 · 김주영 · 김두관 · 양경숙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이수진 · 이정문 · 박상혁 · 우상호 · 주철현 · 정태호 · 신현영 · 김주영 · 김두관 · 양경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8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박성민 · 정운천 · 박대수 · 구자근 · 박덕흠 · 강민국 · 엄태영 · 장동혁 · 김용판 · 전봉민 의원 발의)

12월 12일 회부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이종성 · 최재형 · 백종현 · 윤창현 · 우신구 · 박대수 · 전봉민 · 임이자 · 배준영 · 조정훈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황희 · 전해철 · 박정 · 박상혁 · 안규백 · 강선우 · 어기구 · 이용선 · 최인호 · 신영대 · 김종민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박덕흠 · 이현승 · 이종성 · 김용판 · 성일종 · 조명희 · 하영제 · 안철수 · 백종현 · 윤영석 · 박정하 · 정우택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 · 김용판 · 서범수 · 김상훈 · 이종성 · 이현승 · 김미애 · 임병헌 · 하영제 · 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4일 회부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4. 신현영 · 민병덕 · 설훈 · 이수진 · 정필모 · 위성곤 · 송갑석 · 윤영덕 · 허숙정 · 이용선 의원 발의)

12월 15일 회부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5. 인재근 · 양정숙 · 서영석 · 윤건영 · 서동용 · 도종환 · 최혜영 · 최종윤 · 김상희 · 허영 의원 발의)

12월 18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8. 신현영 · 허종식 · 이소영 · 고영인 · 김민기 · 김병기 · 이수진 · 위성곤 · 강민정 · 송갑석 · 윤영덕 · 허숙정 · 이용선 의원 발의)

12월 1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정동만 · 백종현 · 조경태 · 서병수 · 안병길 · 이현승 · 전봉민 · 김도읍 · 이주환 · 황보승희 의원 발의)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민홍철 · 전재수 · 김정호 · 이상현 · 김민철 · 김민기 · 박재호 · 최인호 · 조오섭 · 김두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30. 윤영석 · 김희곤 · 강기윤 · 서범수 · 이채익 · 조명희 · 이달곤 · 안병길 · 조경태 · 이주환 · 윤한홍 · 김영선 · 권명호 · 이상현 · 최형두 · 서병수 · 하태경 · 이현승 · 박수영 · 전봉민 · 백종현 · 김미애 · 서일준 · 김태호 · 조해진 · 황보승희 · 하영제 · 박대출 · 김도읍 · 장제원 · 강민국 · 정동만 의원 발의)

1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박대출 · 윤영석 · 김태호 · 이용호 · 윤두현 · 안병길 · 이명수 · 金炳旭 · 정우택 · 한무경 · 권명호 · 김영선 · 강기윤 · 김희곤 · 조해진 · 김정재 의원 발의)

1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 발의)

(2023. 12. 8. 이인선·김성원·류성걸·김영식·이명수·강대식·장동혁·이종성·권영세·김미애·이만희·윤창현 의원 발의)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1. 이만희·유의동·박정하·구자근·이주환·유상범·조해진·조명희·권명호·양금희·이채익·김희곤·이용호 의원 발의)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미애·권명호·배준영·구자근·홍문표·백종헌·최연숙·이종성·서정숙·최재형·이태규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미애·권명호·배준영·구자근·홍문표·백종헌·최연숙·이종성·서정숙·최재형·이태규 의원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미애·권명호·배준영·구자근·홍문표·백종헌·최연숙·이종성·서정숙·최재형·이태규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3. 강기윤·김미애·권명호·배준영·구자근·홍문표·백종헌·최연숙·이종성·서정숙·최재형·이태규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 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8	-	5	1	-	28
식품의약품 안전처	1	2	-	2	1	6
질병관리청	-	-	2	4	2	2